

TRADE FOCUS

2016년 36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

- 최근 세계 수입규제 동향과 원인 분석 -

2016년 10월

통상연구실 제현정 연구위원

CONTENTS

[요약]	i
I. 서론	1
II. 전 세계 수입규제 현황	2
1. 전체 동향	2
2. 미국의 수입규제	4
3. 철강산업과 수입규제	11
III.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14
1.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14
2. 품목별, 국별 수입규제 현황	14
IV. 결론 및 대응전략	18

□ 보고서 내용 문의처

통상연구실 제 현 정 연구위원 (☎ 02-6000-5157, hjje76@kita.net)

금년 들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세계경기 회복 둔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일시적인 요인과 중국의 중성장 기조 및 이에 따른 일부 산업의 공급과잉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경제가 중성장 기조로 전환되면서 철강 등 과거 호황기에 투자를 확대했던 산업들의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이러한 산업의 밀어내기식 수출이 지속되면서 국별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기업들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면서 미국발 수입규제가 증가하여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를 이끌고 있다. 미국은 수입규제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수출국 피소기업들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대응시 절차적 부담을 가중시켜 수입규제의 내용까지 강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과거 트렌드를 감안할 때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적 기조는 적어도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 초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철강산업의 설비증강이 지속되고 공급과잉에 따른 수입규제 증가가 다른 산업에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구조적 요인에 따른 보호무역주의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여전히 수입규제를 활용하기보다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국가로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우리 수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여전히 전 세계 수입규제 대상국 중 중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력산업인 철강, 화학 등이 주요 수입규제 타겟이 되고 있어 각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될 경우 우리 수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중국을 겨냥한 수입규제가 증가하는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과 수출 주력품목 중복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보호무역조치에 대해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기업들과 유관기관들은 수입규제에 대한 사전적 모니터링과 사후적 조사 대응체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경쟁과 추격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의 고부부가가치화 노력을 지속해야할 것이다.

분 문

I. 서론

-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 중국 경제의 중속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호무역주의적 조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그동안 WTO 및 FTA를 통해 관세장벽이 완화됨에 따라 최근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는 대부분 수입규제조치, 기술규제,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의 강화 형태로 나타남
 - GATT/WTO 협정상 규정되어 있는 무역구제조치나 안전, 환경, 위생 등을 위한 국내 규제 및 조치를 모두 ‘비관세장벽’으로 규정할 수는 없으나, 국내산업 보호를 위장한 조치들이 증가할 경우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평가할 수 있음
 - WTO는 I-TIP¹⁾을 통해 국가별로 통보된 비관세조치(NTMs : Non-tariff measures)를 수집하고 정량화하고 있으며,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됨
- 동 보고서는 여러 비관세조치 중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무역구제조치 현황을 통해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해보고자 함
 -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의 무역구제조치는 합법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일시적으로 관세를 인상하여 수입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활용됨
 - 세계은행(World Bank)은 반덤핑, 상계조치, 세이프가드에 대한 국별 통계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동 조치를 ‘일시적 무역 장벽(Temporary Trade Barriers)’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1) I-TIP : Integrated Trade Intelligence Portal : 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비관세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로 상품무역 관련하여 위생검역, 기술규제, 반덤핑, 상계조치, 세이프가드, 수량규제 등의 내용을 포함

Ⅱ. 전 세계 수입규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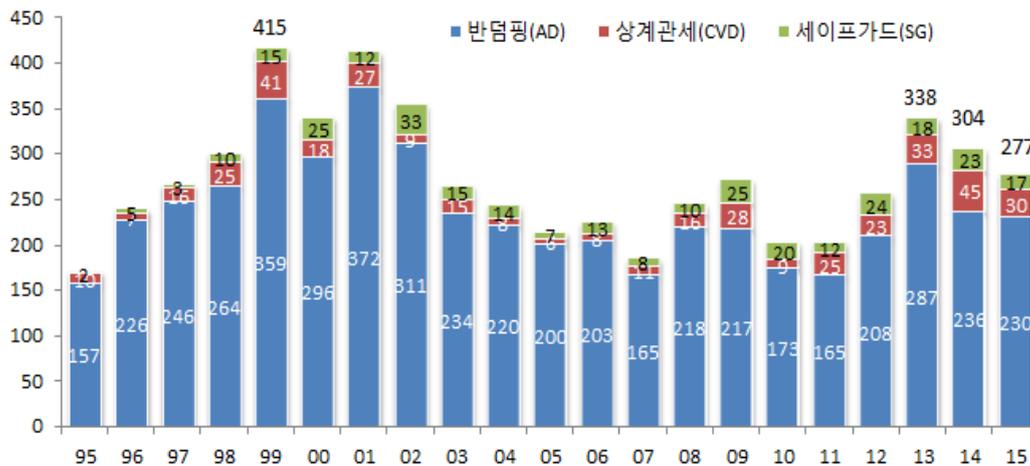
1. 전체 동향

(1) 전 세계 수입규제조치 동향

- WTO에 따르면, 2015년 연간 전 세계 수입규제조치 조사개시(Initiation) 건수가 총 27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2014년 304건에 비해 27건 감소
- 근거별로는 반덤핑 조치 230건, 상계관세 조치 30건, 세이프가드 17건으로 모두 2014년에 비해 감소

〈전 세계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Initiation) 추이〉

(단위 :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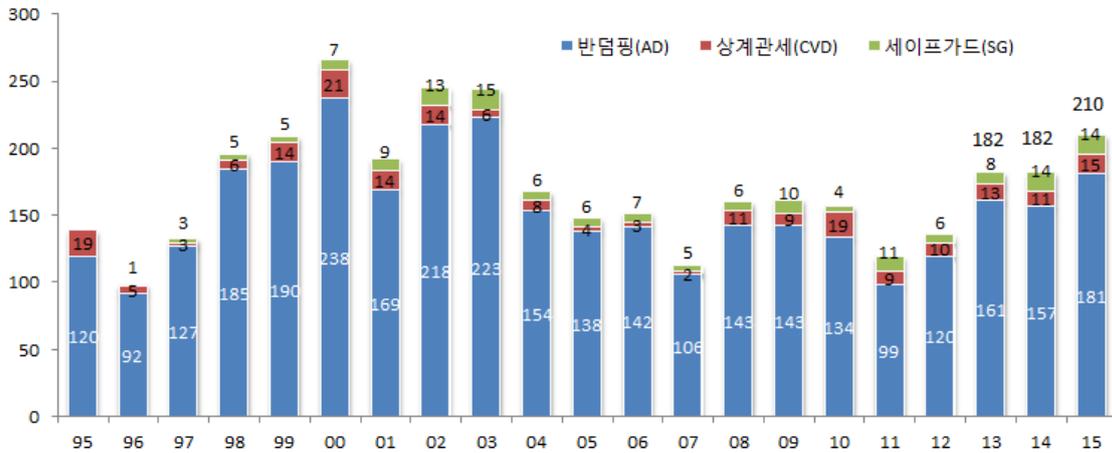


자료 : WTO

- 2015년 실제로 규제가 부과(Measures)된 건수는 총 210건으로 2014년에 비해 2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규제부과 건수는 2011년(119건) 이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근거별로는 반덤핑 규제 181건, 상계 조치 15건, 세이프가드 14건이며, 반덤핑 규제가 전년에 비해 24건 증가함

〈전 세계 무역구제조치 부과(Measures) 추이〉

(단위 : 건수)



자료 : WTO

(2) 국별 수입구제조치 동향

■ 최근 전 세계 수입규제 동향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신흥국의 수입규제는 감소한 반면, 미국의 수입규제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 수입국별 반덤핑 조사개시 추이를 살펴보면, 수입국으로서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2015년 42건으로 전년에 비해 23건 증가함
 - 반면, 최근 수입구제조치를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는 인도와 브라질의 2015년 조사개시 건수는 전년에 비해 각각 8건, 12건 감소함
- 수출국별로는,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가 2015년 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에 대한 조사개시가 17건으로 나타남
 - 2015년에 전년 대비 조사개시 건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국가는 베트남 (+7건)과 브라질(+7건)이며, 특히, 베트남은 2015년 피조사개시 기준 4위를 차지함

〈주요 수출국/수입국별 반덤핑 조사개시(Initiation) 추이〉

(단위 : 건수)

수출국 (피조사국)	'12	'13	'14 (A)	'15 (B)	증감 (B-A)	수입국 (조사국)	'12	'13	'14 (C)	'15 (D)	증감 (D-C)
중국	60	75	63	71	8	미국	11	39	19	42	23
한국	22	25	18	17	-1	인도	21	29	38	30	-8
인도	10	11	15	13	-2	브라질	47	54	35	23	-12
베트남	8	3	5	12	7	터키	14	6	12	16	4
대만	22	17	13	10	-3	말련	11	8	8	14	6
일본	6	11	7	8	1	EU	13	4	14	12	-2
러시아	3	5	4	7	3	파키스탄	5	6		12	12
브라질	2	6		7	7	중국	9	11	7	11	4
인니	6	7	5	6	1	호주	12	20	22	10	-12
터키	5	5	8	6	-2	멕시코	4	6	14	9	-5
전세계	208	287	236	230	-6	전세계	208	287	236	230	-6

자료 : WTO

2. 미국의 수입규제

(1) 미국의 수입규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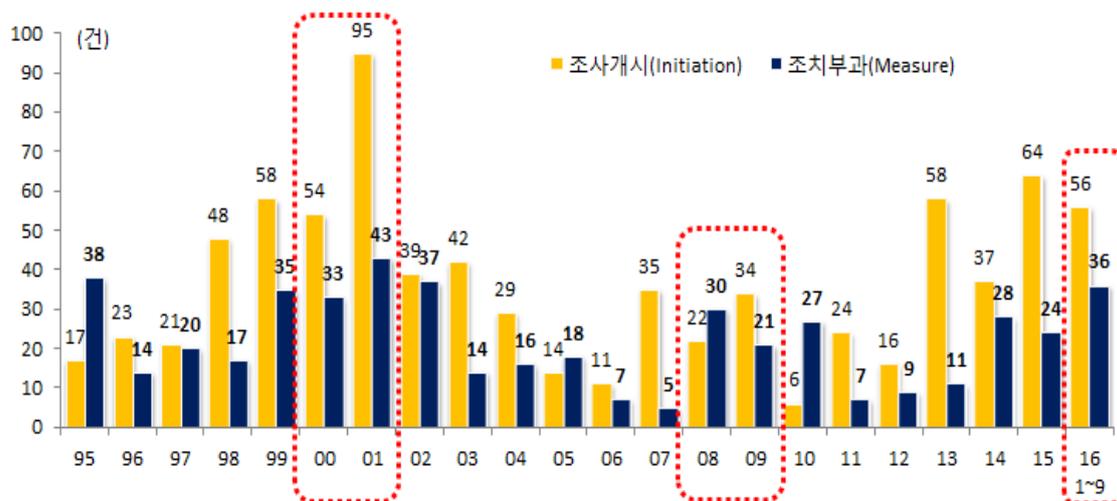
■ 최근 세계경제 회복 지연, 중국의 중속성장 기조, 이에 따른 일부 산업의 공급과잉과 2016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미국의 보호주의적 수입규제 조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중성장 기조로 전환되고 국내적으로 과잉 공급된 제품들을 수출로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미국내 중국산 제품의 유입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수입규제 증가
- 2013년부터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 1~9월간 이미 56건의 조사가 개시되었음
- 수입규제 부과(measures)도 2014년부터 증가하여 2015년에는 24건, 금년 1 ~ 9월간 36건의 규제가 부과되었음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수입규제조치의 증감은 미국의 경제성장률 변화와 대통령 선거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미국 특유의 정치경제 체제상 정치권에 대한 산업계의 영향력이 큰 데 기인함

- IT 버블 붕괴로 미국 경기가 둔화된 2000년 대통령 선거시 클린턴(민주당)에서 부시(공화당)로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수입규제가 크게 증가한 바 있음
-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당시에도 대통령 선거시 오바마(민주당)가 당선되고 이전 세계경기 호황시기(2004 ~ 2007년)에 비해 수입규제가 강화되었음
 - 그러나 동 시기에는 G20 등 국제공조를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여건에 비해 수입규제 조치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음
- 최근 중국을 겨냥한 수입규제가 증가하는 가운데 2016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기업들의 수입규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세계적인 공급과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철강업계를 주축으로 선거 정국을 이용한 보호무역주의 요구가 거세짐
 - 더구나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경선 초기부터 중상주의적 발언을 지속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더욱 강화시킴

〈미국의 수입규제 조사개시(Initiation) 및 조치부과(Measure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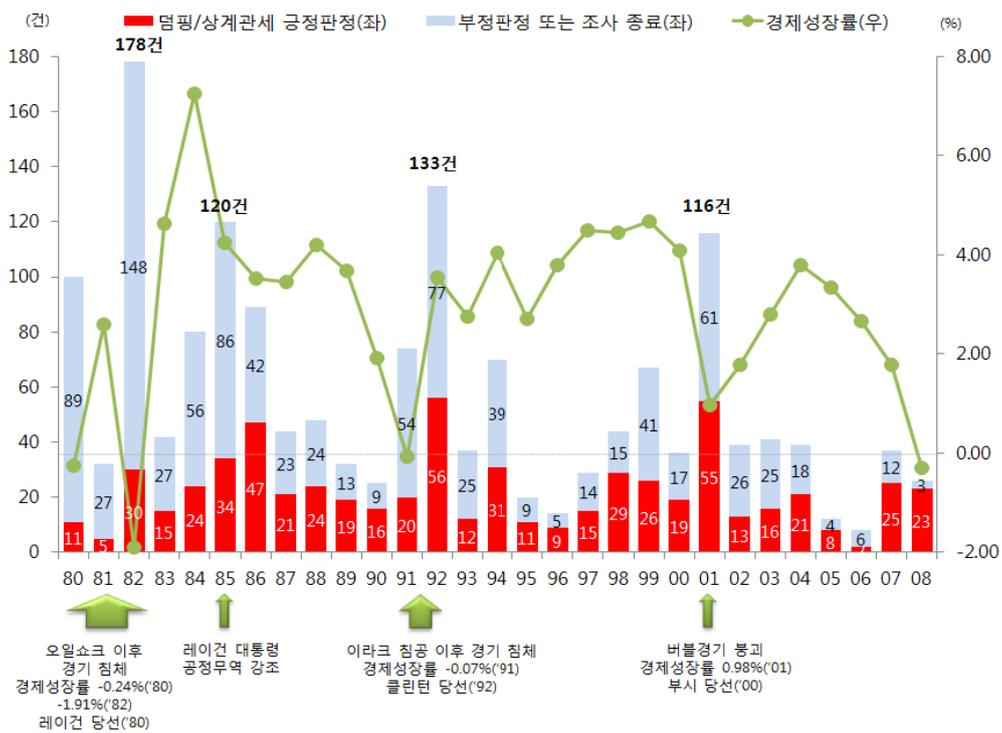
자료 : WTO, USITC

[참고1] 미국의 정치경제와 수입규제 트렌드

미국 경제성장 둔화, 정권 교체,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미국 정치경제의 공식과도 같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거나 경기가 침체될 경우 거의 예외 없이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들의 수입규제조치 요구가 커지기 마련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맞물릴 경우 선거 이전부터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초기까지 기업들의 국내산업 보호 요구가 거세진다.

과거 트렌드를 살펴보면, 미국이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을 고수했던 1980년대에 수입규제가 다른 시기에 비해 강화되었다. 특히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1982년에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건수가 178건에 달했다. 1984년부터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커지면서 레이건 대통령이 공정무역(fair trade)을 강조하고 미의회에서는 보호주의 입법안이 넘쳐났다. 1990년대 초반에는 이라크와의 전쟁으로 경기가 둔화되면서 1992년 제소건수가 133건에 달했으며, 결국 같은 해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이 승리를 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건수 추이)



주 : 부정판정(Negative)은 USITC가 산업피해가 없다고 판정한 경우이며, 조사 종료(Terminated)는 제소기업 (petitioner)이 제소를 철회하거나 상무부(DOC)에서 종료된 건을 포함
 자료 : USITC, IMF

(2) 국별/산업별 수입규제조치 현황

- 미국은 9월말 현재 총 353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별 부과 건수는 중국, 인도, 대만, 한국 순으로 나타남
- 미국은 중국에 대해 총 140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중 반덤핑은 102건, 상계관세는 38건으로 집계됨
- 중국 다음으로 인도 27건, 대만 23건, 한국 20건, 일본에 대해 16건을 부과하고 있음

〈미국의 국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현황 (2016년 9월 현재)〉

(단위 : 건수)

	반덤핑	상계관세	합계
중국	102	38	140
인도	16	11	27
대만	22	1	23
한국	16	4	20
일본	16		16
인도네시아	9	4	13
베트남	9	3	12
브라질	8	2	10
터키	5	5	10
멕시코	10		10
총합계	275	78	353

자료 : USITC

- 품목별로는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부과 건수가 171건으로 총 건수의 40%를 차지
- 철강제품 다음으로는 화학/의약 47건, 금속/광물 24건이며, 기타 공산품에 대해서 총 64건이 부과 중임

〈미국의 품목별 수입규제 부과 현황 (2016년 9월 현재)〉

(단위 : 건수)

품목	농산물	화학/ 의약	철강	기계 전자	금속/ 광물	기타	플라스틱/ 고무	섬유/ 의류	합계
건수	22	47	171	3	24	64	19	3	353

자료 : USITC

(3) 미국의 수입규제 전망

■ 과거 트렌드를 고려할 때 내년 새로운 대통령 취임 초기까지는 미국 업계의 강한 수입규제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특히, 국내 산업 보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수입규제 제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9월 21일 미철강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서한을 USTR에 제출

■ 수입규제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작년 6월 입법화된 '미국 무역집행 효율화 법(American Trade Enforcement Effectiveness Act)'²⁾으로 인해 수입규제의 내용도 강력해짐

- 동 법안은 미국의 1930 관세법(Tariff Act of 1930)의 Section 776을 개정한 내용으로 USITC의 산업피해 판정 및 상무부의 덤핑마진 산정시 자료 활용 등이 주된 내용임

– 가장 주목이 되는 개정 내용은 피조사 기업이 필요한 자료를 적절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사당국인 상무부가 ‘불리한 이용 가능 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 AFA)’를 활용하여 최종 판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능한 높은 덤핑마진 또는 상계관세율을 산정할 수 있게 됨

– 이용 가능한 정보(facts available) 원칙 적용은 반덤핑협정 제6.8조에도 규정되어 있으며³⁾, 조사당국 입장에서는 원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최종판정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조항임

- 동 개정안은 당초 철강산업을 주된 지역의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며, 오하이오주 브라운 상원의원(민주당)과 포트만 상원의원(공화당) 등 22명의 상원의원들은 지난 3월 22일 상무부 장관에게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이용 가능 정보(AFA)’ 원칙을 적극 사용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제출함

2) 미국 Public Law 114-27, Title V-Improvement to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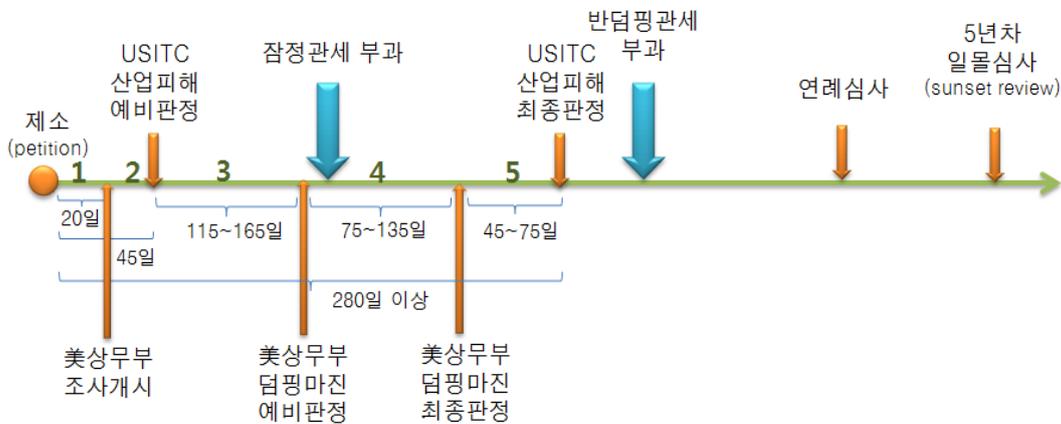
3) 반덤핑 협정 제6.8조 :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입수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참고2] 미국의 반덤핑 조사 제도

반덤핑협정에 따르면, 덤핑 행위는 국제무역의 정당한 흐름을 왜곡하는 불공정무역관행 (unfair trade practice)으로 덤핑의 존재 여부와 산업에 대한 피해가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WTO 반덤핑협정은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반덤핑 조사, 판정 등의 제도를 운용하는 큰 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별 시행방법은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지고 있다. 반덤핑 조치를 가장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 조사는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 DOC)와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로 이원화되어 있다. 상무부와 USITC는 합동조사가 아니고 상무부는 외국 수출품의 덤핑 정도를, USITC는 외국 수출품의 덤핑이 미국의 동종 산업에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해 각각의 절차와 법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

반덤핑 조사과정은 5단계(① 상무부의 조사개시, ② USITC의 예비조사, ③ 상무부의 예비조사, ④ 상무부의 최종조사, ⑤ USITC의 최종조사)로 구분되며, USITC가 최종판정에서 미국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긍정 판정하고 상무부가 덤핑 마진을 최종 결정하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반덤핑 명령이 연방 관보(Federal Notice)에 게재된 달의 1년 후 같은 달에 미국 국내 이해 당사자, 해외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특정 생산자나 수출자에 대한 연례재심을 요청할 경우 재심절차가 시작된다. 연례재심을 받은 업체들에게는 새롭게 산정된 반덤핑 관세 예치율이 부과된다. 그리고 반덤핑 명령 후 매 5년마다 일몰재심이 시행되며 반덤핑 명령이 철회될 경우 덤핑 지속 및 산업 피해 지속 여부를 심사하여 반덤핑 지속 또는 철회를 결정한다.

〈미국의 반덤핑 조사 절차〉



자료 : AD/CVD Handbook 14th Edition, USITC

■ 한편, 최근 한국과 미국간 WTO 세탁기 분쟁 상소심에서 한국이 최종 승소함 (9월 7일)에 따라 향후 미국의 표적덤핑(targeted dumping)에서의 제로잉(zeroing) 관행이 시정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이 덤핑 마진 계산시에 활용했던 제로잉(zeroing) 기법은 덤핑 마진이 마이너스인 경우(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높은 경우), 동 마진을 0으로 처리하여 덤핑 마진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함

● 미국은 제로잉 관행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금지한다는 취지의 판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표적덤핑의 경우에 제로잉을 적용해왔음

* 표적덤핑(targeted dumping) : 특정 시기, 장소, 구매자에 대해 덤핑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WTO 협정은 이 경우 해당 거래(individual export transactions)와 정상가격(normal value)을 비교하여 덤핑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WTO 반덤핑 협정문 2.4.2조)

● 미국이 WTO 협정에 따른 이행기간(늦어도 2017년 말까지) 동안 반덤핑 조사 기법을 수정할 경우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 여건 개선뿐 아니라 피제조 기업에게 불리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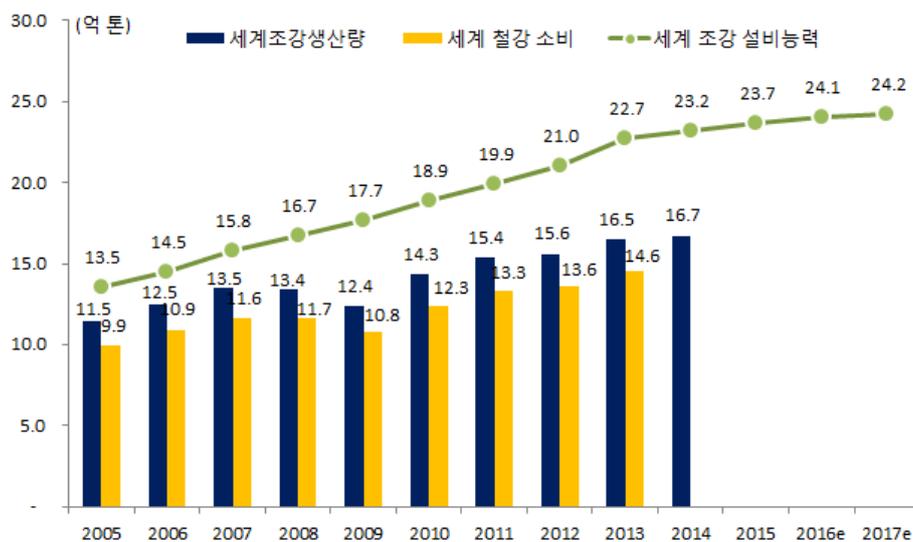
- 단, 미국이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제로잉 관행을 시정해야하는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AFA와 같이 피제조기업에 대한 절차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율의 관세 및 마진율을 산정하는 새로운 관행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3. 철강산업과 수입규제

(1) 세계 철강산업 현황

-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중심에 서 있는 철강산업은 구조적인 과잉설비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신흥국 중심의 설비증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OECD에 따르면, 2012년부터 세계 조강 설비능력은 20억 톤을 초과한 반면, 2013년 기준 세계 철강 소비는 14.6억 톤에 머물러 있음
 - 2017년까지 세계 조강 설비능력은 24.2억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인도와 중국의 설비능력 증설이 주도할 것으로 보임

〈세계 조강생산, 설비능력, 철강소비 추이〉



자료 : 설비능력은 OECD, 조강생산 및 철강 소비는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

- 중국의 철강 자급률이 상승한 반면 내수 부진으로 대세계 철강 수출물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미국, EU를 비롯한 수입국들의 철강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중국의 철강 자급률은 2010년에 이미 100%를 초과하여 2014년 기준 111.1%이며, 인도의 자급률도 2014년에 106.9%를 기록

〈비OECD 국가의 철강 자급률〉

(단위 : 백만톤)

지역	철강 생산(A)		소비(B)		자급률(A/B %)	
	2010	2014	2010	2014	2010	2014
CIS	108.2	106.1	55.5	63.3	194.8	167.7
남미	44.1	45.2	47.6	51.0	92.7	88.7
아프리카	16.6	15.0	30.2	40.0	55.0	37.6
중동	19.7	29.7	50.8	53.6	38.7	55.3
아시아	749.3	956.3	769.2	938.1	97.4	101.9
중국	638.7	822.7	612.1	740.4	104.4	111.1
인도	69.0	87.3	69.1	81.7	99.8	106.9
기타	41.5	46.4	88.1	116.1	47.2	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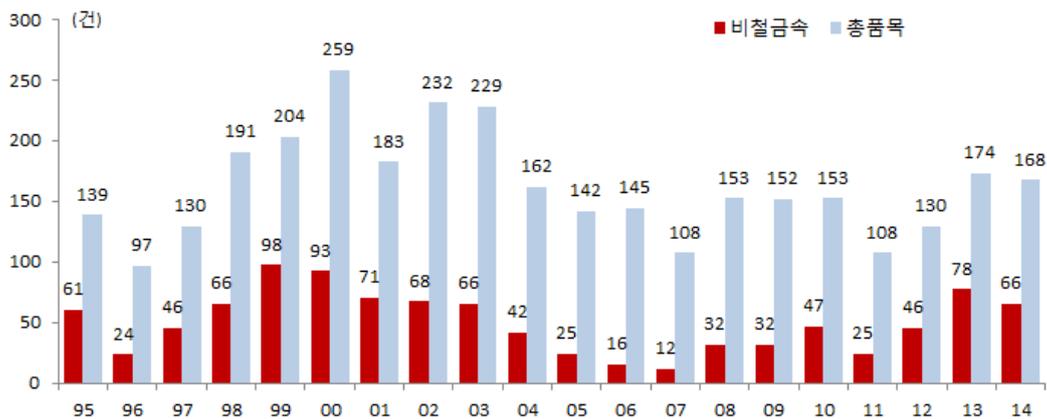
주 :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는 러시아, 몰도바, 벨라루스 등 구소련에 속해있던 9개 국가로 이루어진 독립국가연합임

자료 : OECD

(2) 철강산업 수입규제 현황

- 철강제품에 대한 전 세계 수입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4년에 66건의 규제가 이루어짐

〈비철금속(철강)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Measures) 추이〉



자료 : WTO

- 국가별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누적 건수(1995~2014년간)를 살펴보면, 중국이 최대 피조사국이며, 미국이 최대 조사국으로 나타남

- 수출국 기준으로 2014년 현재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283건, 규제부과는 202건이며, 2위인 한국에 대한 조사개시는 104건, 규제부과는 65건으로 집계됨
 - 이 외에 철강제품 수입규제 대상국으로 대만, 러시아, 인도, 우크라이나, 일본 등이 대표적임
- 한편, 수입국 기준으로 2014년 현재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287건, 규제부과는 187건이며, 2위인 EU는 조사개시 171건, 규제부과는 111건으로 집계됨
 - 이 외에 캐나다, 인도, 아르헨티나, 멕시코, 호주 등이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수출국/수입국별 비철금속 반덤핑 조사 및 규제 (2014년 현재 누적)〉

(단위 : 건)

수출국(피조사국)				수입국(조사국)			
국가	조사개시	국가	규제부과	국가	조사개시	국가	규제부과
중국	283	중국	202	미국	287	미국	187
한국	104	한국	65	EU	171	EU	111
대만	88	러시아	63	캐나다	138	캐나다	90
러시아	79	대만	51	인도	89	아르헨티나	65
인도	61	우크라이나	47	아르헨티나	83	멕시코	51
일본	58	일본	46	호주	83	인도	46
우크라이나	57	브라질	39	브라질	80	호주	45
남아공	43	남아공	32	남아공	60	브라질	45
태국	41	인도	30	멕시코	51	태국	37
말레이시아	39	태국	24	인도네시아	46	남아공	34
총계	1,379	총계	918	총계	1,379	총계	918

주 :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한 숫자임
 자료 : WTO

Ⅲ.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1.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 2016년 9월 말 현재,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총 179건이며, 이 중 131건이 규제중, 48건이 조사중임
- 수입규제 근거별로는 반덤핑이 가장 많은 127건,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7건, 세이프가드는 45건으로 나타남

〈근거별 규제 및 조사 건수 (2016.9월 말 현재)〉

(단위 : 건수)

	반덤핑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합계
규제 중	97	6	28	131
조사 중	30	1	17	48
합계	127	7	45	179

주 : 규제중은 1991년부터 2016년 9월 사이에 규제가 시작되어 지속되고 있는 건수임
조사중은 2014년부터 2016년 9월 사이에 조사가 개시되어 지속되고 있는 건수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비관세장벽 포털(ntb.kita.net)

2. 품목별, 국별 수입규제 현황

- 품목별로는 수입규제 조사 및 부과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은 광물/금속(철강제품 포함)으로 조사중 29건, 규제중 68건임
- 2016년에 조사가 개시된 총 31건 중 광물/금속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가 20건이며, 대부분 HS 72류 철강제품에 집중되어 있음
- 광물/금속 다음으로 수입규제 건수가 많은 품목은 화학제품으로 현재 조사중 10건, 규제중은 35건으로 집계됨
- 섬유는 11건, 목재/제지는 8건, 고무/가죽 및 전기기기에 대해서는 각각 5건이 조사 및 규제중임

〈품목별 규제 및 조사 건수 (2016.9월 현재)〉

(단위 :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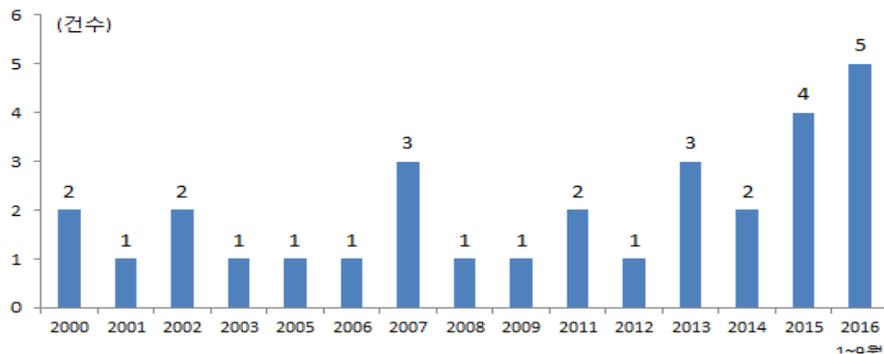
	규제중				조사중				총 합계
	반덤핑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합 계	반덤핑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합 계	
농수산식품			2	2			1	1	3
화학제품	31		4	35	8		2	10	45
고무/가죽	3			3	2			2	5
목재/제지			5	5	2		1	3	8
섬유	10		1	11					11
광물/금속	47	5	16	68	15	1	13	29	97
전기기기	4			4	1			1	5
기계		1		1	1			1	2
수송기계	1			1	1			1	2
기타 공산품	1			1					1

자료 : 한국무역협회 비관세장벽 포털(ntb.kita.net)

■ 한국에 대한 선진국의 수입규제는 총 48건인 반면, 신흥국의 수입규제는 13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선진국 중 규제건수가 가장 많은 미국은 조사중 5건, 규제중 18건이며, 금년 1~9월간 총 5건의 조사가 개시되었음

<연도별 미국의 對한국 수입규제 조사개시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비관세장벽 포털(ntb.kita.net)

- 신흥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는 조사중 38건, 규제중 93건이며, 수입규제 건수가 많은 국가는 인도(31건), 인도네시아(11건), 중국(11건), 브라질(10건), 태국(9건) 순으로 나타남

〈국별 수입규제 조사 및 규제 건수 (2016.9월 말 현재)〉

(단위 :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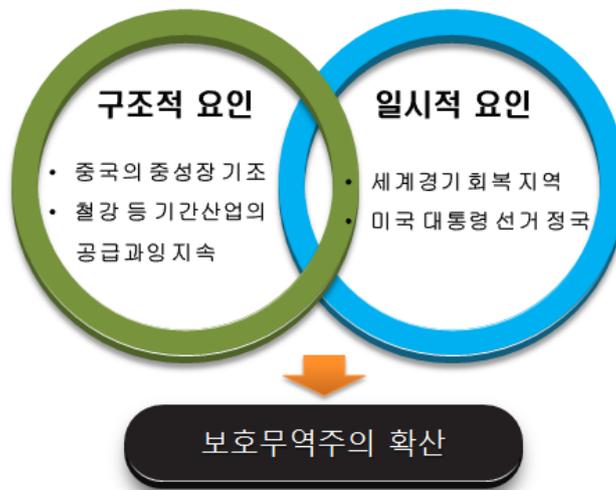
구분	국가	규제종				조사종				총합계
		반덤핑	반덤핑/ 상계 관세	세이프 가드	합계	반덤핑	반덤핑/ 상계 관세	세이프 가드	합계	
선진국	미국	12	6		18	4	1		5	23
	호주	7			7	2			2	9
	캐나다	8			8	1			1	9
	EU	4			4	2			2	6
	일본	1			1					1
	소합계	32	6	0	38	9	1	0	10	48
신흥국	인도	19		5	24	6		1	7	31
	인도네시아	3		4	7	3		1	4	11
	중국	11			11					11
	브라질	10			10					10
	태국	4		3	7	1		1	2	9
	터키	4		2	6	2		1	3	9
	말레이시아	4		1	5			2	2	7
	베트남			3	3	1		1	2	5
	파키스탄	3			3	2			2	5
	남아공	1			1			2	2	3
	대만	1			1	2			2	3
	우크라이나			2	2			1	1	3
	이집트			1	1	1		1	2	3
	튀니지							3	3	3
	필리핀			3	3					3
	멕시코	1			1	1			1	2
	사우디아라비아					1		1	2	2
	아르헨티나	2			2					2
	콜롬비아	2			2					2
	러시아			1	1					1
	에콰도르			1	1					1
	요르단							1	1	1
	우즈베키스탄						1		1	1
	잠비아							1	1	1
	칠레			1	1					1
	코스타리카			1	1					1
	소합계	65	0	28	93	21	0	17	38	131
총합계	97	6	28	131	30	1	17	48	179	

자료 : 한국무역협회 비관세장벽 포털(ntb.kita.net)

IV. 결론 및 대응전략

-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특징)** WTO에서 집계된 전 세계 수입규제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조사개시 건수는 감소하였지만 미국의 수입규제와 철강산업의 규제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의 수입규제 증가가 가장 특징적이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들의 수입규제가 2015년에는 감소세를 나타냄
- 단, 이는 여러 비관세장벽 중 수입규제에 국한된 평가이며, 이 외에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비관세장벽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
- **(보호무역주의 원인)** 최근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세계경기 회복 둔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일시적인 요인과 중국의 중속성장 기조 및 이에 따른 일부 산업의 공급과잉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 **(일시적 요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국별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조치가 증가하고 있음
 - 더구나 경기둔화, 일자리 창출 부족 등의 문제를 무역과 결부시켜 반무역정서가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임
 - 금년에는 미국이 대통령 선거로 인해 기업들의 거센 요구에 따라 수입규제를 강화하면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이끌고 있음
 - 미국의 과거 트렌드를 감안할 때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적 기조는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 초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구조적 요인)** 일시적인 요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 경제가 중성장 기조로 전환되면서 과거 호황기에 투자를 확대했던 산업들의 공급과잉이 국별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임

- 철강산업의 설비증강이 지속되고 공급과잉에 따른 수입규제 증가가 다른 산업에 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구조적 요인에 따른 보호무역주의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OECD 철강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급 과잉, 정부보조금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당분간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한국에 대한 영향)** 한국은 여전히 수입규제를 활용하기보다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국가로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우리 수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한국은 전 세계 수입규제 대상국 중 중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력산업인 철강, 화학 등이 주요 수입규제 타겟이 되고 있어 각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될 경우 우리 수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중국산 제품을 겨냥하여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의 중복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
- 미국 대선 정국이 끝나고 내년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다소 누그러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입규제 대상이 될 경우 최악의 경우 수출 자체가 어려워지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 있음

■ **(대응방안)** 당분간 수입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조사가 개시될 경우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수입규제 제소의 움직임에 미리 파악하기 위해 무역 관련 유관기관 및 업종별 단체에서 해당 품목의 수입국별 수입물량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 중국을 겨냥한 수입규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산 제품이 함께 제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동일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입국의 대중국 수입물량 추이도 주시해야 함
- 미국의 경우 수입규제 조사 절차상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작년부터 조사당국이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AFA 원칙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가 필요함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하기로 결정한 경우 최대한 조사당국의 자료 요청에 협조하고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출하여 AFA 원칙에 의거한 판정을 최대한 차단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과잉공급 및 중국의 추격과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정부 차원에서는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에 앞장서고 철강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

〈참고문헌〉

- 김수동, 고준성, 유정근, 김바우, 김종탁, 미국과 EU의 반덤핑 조치 효과 분석과
우리 기업의 대응 사례 연구, 2012년, 산업연구원
- 김지선, 유승록, “2016년 전세계 철강산업 화두는 ‘통상마찰’” 포스리보고서,
2016년 2월 25일, 포스코경영연구원.
- 박운서, 통상마찰의 현장, 1988년, 매일경제신문사.
- 외교통상부, 우루과이라운드 다자무역협상 결과, 2000년 8월.
- 유지열, 미국의 반덤핑법과 실제, 2002년, 다산출판사.
- 정재호, 이재민,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 활용 연구, 2013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제현정, 경고등 켜진 對한국 수입규제, Trade Focus Vol.13 No.8, 2014년 2월,
국제무역연구원.
- OECD, Capacity Developments in the World Steel Industry, 2015, DSTI/
SU/SC(2015)8/FINAL.
- Simon J. Evenett and Johannes Fritz, “Global Trade Plateaus – The 19th Global
Trade Trade Alert Report” 2016, Global Trade Alert.
- USITC,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Handbook, 14th edition, June 2015.

〈통계〉

- 한국무역협회 비관세장벽 포털, ntb.kita.net.
- Steel Statistical Yearbook 2015, World Steel Association.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홈페이지, www.usitc.gov.
- WTO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통계, www.wto.org.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

- 최근 세계 수입규제 동향과 원인 분석 -

Trade Focus 2016년 36호

발행인 | 김인호

편집인 | 김극수

발행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행일 | 2016년 10월 13일

인쇄처 |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 2-97호